

오피니언

월/요/광/장

구길선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관계가 발각 뒤집히고 국무총리실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청와대 전 비서관의 개입설도 흘러 나온다.

그렇다면 '불법사찰'과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재판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재판상의 사례를 들어 이 점을 생각해 보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4월25일 A모 전 도지사 선거를 위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 일부 외부인 등이 전 제주도지사 관사를 수시로 오간다는 제보를 접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관사에서는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제주도 교수, 전 제주일보 기자 등이 모여 있었다. 그날 저녁에 있을 KBS 주최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토론회에 대비해 A 전 지사를 위한 대담 및 토론 자료, 예상 질의·답변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제주 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 공무원들이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

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수사 의뢰의 골자였다.

이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제주지방 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제주도지사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당시의 압수·수색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점이

있었다. 압수물 중에는 영장에 적지 않은 수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 포함됐다. 또 영장집행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A 전 도지사는 같은 해 10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게 하였다' 등의 공소사실로 제주지방 법원에 공소 제기됐다. A씨와 그 변호인은 법정에서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이나 2심을 담당한 광주고등법원은 종래의 대법원 관례에 따라 '비록 압수절차가 위

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즉 압수물은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만큼 그 형상에 관한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압수물과 그 압수물을 기초로 해서 획득한 진술(이른바 2차적 증거)을 유죄 인정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의 3심을 담당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7년 11월15일 종래의 대법원 관례를 변경하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에

우리 사법사상 획기적 판결중의 하나이다.

결국 A 전 지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금년 6월까지 제주도지사로써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형사 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적 진실 발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형사 절차는 '국가에 의한 부당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오로지 실제적 진실 발견만으로는 안 되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유죄를 인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갖고 있는 권리의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면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은 재판의 결과 못지않게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결국 그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한다면 앞으로 수사 절차를 보다 신중하고 적법하게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용인해준다면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의 불법은 영영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관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연한 헌법, 이를 이어받아 실제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관례를 통해 형성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후 '제주지사 압수수색사건'이라 불리는데,

기고

최치영



2009년 일명 '기후게이트'와 '빙하게이트'의 논란 속에서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미 전 세계의 나라들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4월 13일 5개 지방기상청 산하에 기후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지역별로 발생하

해에 비해 지구온난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또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해역별 침수가능 면적 연구에서 해수면이 1m 상승하였을 때 해역별 침수 가능면적은 서해안-동해안-남해안 순으로 나타났다. 해수면 상승에 대하여 한반도의 서해안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호남지역은 한반도의 남서부에 위치하여 서해와 남해를 면하고, 전국 해안선 길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섬의 수는 전국의 62%이며,

호남연안 생태계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해야

는 기후변화정보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응·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을 포함한 지역적 또는 국가적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온과 해수면 온도 상승·해수면 높이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연안지역이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보고에 따르면 동해의 표면수온은 연평균 16.7도로, 33년(1968~2000년) 동안 0.72도 상승했고, 남해의 표면수온은 연평균 18.6도, 33년 동안 0.53도 상승, 서해 표면수온은 연평균 14.2도로, 33년 동안 0.99도 상승했다.

서해는 해수 총량이 적고, 수심이 얕은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동해·남

해 지역에 비해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도 많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비 호남지역의 어업가구수는 42%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호남지역이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역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 등이 시급하다. 이미 농업분야의 영향평가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으나, 연안생태계 등의 영향평가는 미미한 실정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6월25일 호남 기후변화 관련 협력기관 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호남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영향조사 및 기술 개발·지원 등 분야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연안 기후변화의 연구는 이제 절실한 단계이므로 초석을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광주지방 기상청장>

불벌·가마솔·찜통더위 대신 '무더위'로 고쳐 썼으면

매년 이때가 되면 무더위가 찾아오곤 한다. 지구가 온난화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매년 반복되는 더위이다. 그런데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듣게 되면 불벌더위, 가마솔더위, 찜통더위 등 강한 표현으로 보도되고 방송된다. 불 같은 더위 가마솔 같은 더위 찜통 같은 더위라면 모든 동식물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위의 강한 표현보다 무더위, 더위 심함 등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한다.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불벌, 가마솔, 찜통 등의 단어를 보고 듣게 되면 더더욱 더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싶다. 더울 때 시원한 말 부드러운 말 '무더위' 등으로 고쳐 보도 방송하면 서민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정범·광주시 북구 임동>

법조칼럼

이승혜



여고생 지영이(가명)가 친구 은주(가명)의 아버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은주네 집에서 놀다 밤에 은주와 함께 잠을 잤는데, 은주 아버지가 와서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필자가 기록을 검토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지영이가 "제가 벌벌 일어나, 은주 아버지가 저를 만지는 것을 멈추고 은주 자리로 가더니 은주의 가슴을 손으로 막 주물렀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은주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였다. 은주는 강간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계 걱정에서도 자유로워진 후에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몇 개를 짚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각 청마다 피해자전담검사와 지원전담관을 두고 피해자지원실을 설치하여 각종 상담,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등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다. ② 각 검사실에서는 일정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여 피해

내가 만일 한 괴로움을 달랠 수 있다면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은주를 상대로 아버지로부터 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역시나 은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해오고 있었다. 술만 마시면 자기를 때리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차마 반항이나 거부할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왔다고 했다.

즉시 은주 아버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하였고 은주 아버지도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여 사건 자체는 별다른 문제 없이 처리되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이 처리된 것과는 별개로 은주의 상처와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은주는 강간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고교소에 들어갈 경우 자신과 동생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을 염려하여 아무에게도 아버지의 죄를 말하지 않고 차마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참고 살아왔던 것이다. 어쩌다 지영이 사건이 터지고 누군가 먼저 물어봐 주자 그동안의 설움이 한꺼번에 폭발쳐 올라 진실을 밝히기는 했지만, 막상 아버지가 구속되고 보니 생계 문제가 또 다른 두려움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다.

필자는 소속 검찰청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은주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였고

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고, 각종 통지를 시행하여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③ 특별히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또한 은주 사건의 경우처럼 범죄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생계비, 학자금, 취업알선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하고, 기타 의료기관 연계 등의 의료지원, 배상명령제도 안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안내, 법률구조공단 안내 등의 법률지원을 시행하기도 한다. ⑤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설치하여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도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으로 2010. 8. 15.부터는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장애구조금 지급대상도 '장애 및 중상해'로 확대된다)

검사 생활이 힘들 때도 많고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E.디킨슨의 시처럼 "내가 만일 에타는 한 가슴을 달래 줄 수 있다면, 내가 만일 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괴로움을 달래주거나, 할딱거리리는 작은 피해자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되돌려 줄 수만 있다면" 나의 검사로서의 삶은 정녕 헛되지 않을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또 '호남 민심' 아우르지 못한 8·8 개각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이 8일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급 9명을 교체하는 조각(組閣) 수준의 개각에 대해 ▲세대교체 ▲소통 및 국민통합 ▲친(親)서민 중도실용의 '3대 기조'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8·8 개각은 다소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견해다. 우선 지난 1·2기 개각 때 철저하게 소외된 호남인사의 중용을 기대했으나 지식경제부 장관에 광주 출신의 이재훈 전 차관을 기용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장관급에 광주·전남 출신은 유입된 법무·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으나 왠지 '구색 맞추기' 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이날 경북 출신이 4대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제청장에 임명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번 개각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호남인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기에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각의 면면을 뜯어보면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40대 총리의 등장은 차기 대권의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고, 한때 '왕의 남자'로까지 불렸던 이재호 의원이 당과 청와대, 정부를 아우를 수 있는 특임장관에 임명됐다.

여기에 논란을 일으켰던 국방부·국토해양부 장관이 유입되고 '실세 차관' 등 대통령의 최측근이 새 내각에 대거 포진한 것은 집권 후반기에 맞아서도 '레이더'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선 '회전문 인사' '친위 내각' '책임 회피용' 개각이라하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책임질 진용은 갖춰졌다. 새 내각이 말뿐이 아닌 소통과 화합, 친서민 등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행보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양이에 생선가게 딸긴' 대학 연구비 횡령

대학이란 우리 사회 최고의 지식인들이 영위하는 집단이다. 학사와 석·박사를 배출하는 대학사회는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실천을 요구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최근 잇따라 터지는 교수사회의 비리는 대학에서마저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순천대에서는 지난 6월 말 현재 교수 2명이 기자재 등을 허위로 구입하거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4억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횡령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또 감사원은 최근 연구비를 빼돌려 생활비로 쓰고, 인건비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챈 전남대와 순천대 교수를 각각 파면하도록 대학 측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대 A교수는 지난 2003년 정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연구과제를 자신의 명의로 만든 연구소에서 수행한 뒤 성과활용수입금 1억300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A교수는 자신의 은행 계좌로 수입금을 받은 뒤 일부만 대학 산학협력

단에 반납했다고 한다.

순천대 B교수 역시 지난 해 9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8명을 연구원이라고 속이고 대학 산학협력단에 등록한 뒤 인건비 2억7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것이다. B교수는 특히 연구비를 착복하기 위해 가짜로 대학 부속 연구소까지 만들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 사회에서조차 터부시되는 이런 치졸한 사건이 대학에서마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대학 측에 책임이 크다. 연구과제물에 대한 검수 절차 없이 비용을 지급하는 등 연구비에 대한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비리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연구비 횡령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만큼 투명성 집행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최고의 지식인 집단인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딸긴 '격'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믿을 곳을 없다.

無等鼓

'아하 덩구나 세상사/허공을 꾸르는 햇덩이/공기 사이로 스물스물 녹아내리고-'(정성수 '무더위타령')

옛 어른들은 여름을 세 계절로 나눴다. 이마에 땀이 배어나기 시작하는 '초하'(初夏),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중하'(中夏), 그리고 장마가 끝난 다음의 '성하'(盛夏)가 그 것이다. 온대성인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하면서 최근엔 그 구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

만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까지는 초여름, 7월 중순 이후는 한여름으로 가를 수 있겠다.

더위타령



다. 지금이 '성하의 계절'인 셈이다. 피약벌이 내리치지 못을 흘출 벗어던지고 맨살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때다. '6월 무례(無禮)'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했을 법하다. 음력 6월이면 초복에서 말복까지 복(伏)하리가 들어있는 시기다. 무더위 때문에 예도 없고 체면이 없고 털이도 복(伏)한 더 이상 피해야 확실되지 않도록 소의계충부터 철저히 챙길 일이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지난주 전남지역에서만 70대 노인 2명이 숨지고 27명이 폭염확진환자로 진단됐다. 전국 환자(77명)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열사병·일사병·열실신·열탈진 등으로 진료받은 폭염 환자도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래 머물면서 폭염이 9월 초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다. 가도 가도 찰찰인 폭염 앞에 급기야 정부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뉘튼은 감이 있지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의계충부터 철저히 챙길 일이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Table with Kwangju Ilbo header,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